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lan for Disaster Prevention Town Development

백민호* · 이지향**

Back, Min-Ho · Lee, Ji-Hyang

Abstract

Globally, the actual circumstance is that local downpours are occurring and the droughts are extensively continuing on and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earthquakes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changes in nature environment. It is being pointed out also in the case of Korea for the urgen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ituation of repeated occurrence of disasters in the regions where the concept of disaster prevention has not been applied. Accordingl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as been implementing the formation of disaster prevention trial towns since 2009 for the regions vulnerable to disasters and searching for plans to improv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 concept of disaster prevention town and the program type were summarized in this study, and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developing disaster prevention town was presented through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e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ial programs, and the basic concept of forming disaster prevention town was presented to present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disaster prevention town.

Key words : emergency management town, disaster risk district, revitalization plan

요 지

전 세계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지역적 폭우의 발생, 가뭄현상의 장기화, 대규모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재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며 방재대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마을구축과 관련하여 방재마을의 개념 및 사업 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제도, 국내·외 시범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방재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여 방재마을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핵심용어 : 방재마을, 재해위험지구, 활성화 방안

1. 서 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해에 강한 도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5년 1월 17일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지역단위의 방재계획이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에서도 2002년부터 CBDM(Community Based Disaster Management)에서 방재를 키워드로 하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방재역량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단위로 하는 방재마을만들기는 기존의 방재가 재해를 유발시키는 발생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재해

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떻게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하나의 자연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 재해인지 일반적인 자연현상인지를 구별하는 재해분류의 기본적인 정의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은 재해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재해로 발전시키는 인자를 제거하는 것,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하여 유사유형의 재해가 유사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예방 중심의 방재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예산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예방중심의 방재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회원 ·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E-mail : bmh@kangwon.ac.kr)

**강원대학교 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지금까지 방재예산의 집행을 보면,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에 대한 보강, 감시 등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왔으나, 재해를 유발시키는 인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없으며, 예산 투입대비 효과와 관련하여 본다면 재해 유발 인자에 대한 예산 투입에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인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국가의 방재서비스 또한 재해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재해발생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방재개념을 도입한 방재마을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검토하고, 방재마을 필요성 및 사업유형 분석, 관련 법 검토, 국내·외 시범사례 분석,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발전 전략의 검토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재해관리 및 위험지구의 지정현황

우리나라 재해관리를 보면 지금까지 사후피해 복구에 치중해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재해위험 요인의 제거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나 재해 발생 후 구조조치나 미봉적인 복구대책에 치중하여, 구체적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방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방재성 확보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방재성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우 환경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24시간 활동하며 생산과 소비가 지속되는 도시공간에서 방재성, 경제성, 환경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방재, 쾌적하고 효율적인 방재, 환경친화적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그림 1).

사회가 발달할수록 재해유형별 관리와 통합관리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시설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19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의 유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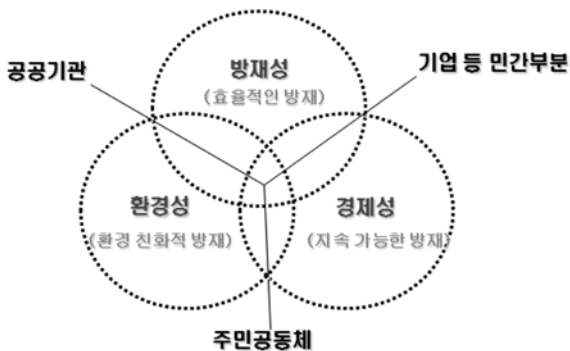


그림 1. 방재계획 다이어그램(Diagram)

표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침수	유실	고립	붕괴	취약방재	해일
계	619	370	92	16	90	43	8
서울	2	2	-	-	-	-	-
부산	12	6	-	-	1	3	2
대구	8	5	-	1	2	-	-
인천	9	6	1	-	1	1	-
광주	8	5	-	-	1	2	-
울산	12	3	1	-	-	8	-
경기	44	16	27	1	-	-	-
강원	56	26	-	2	24	3	1
충북	42	31	6	4	1	-	-
충남	54	47	7	-	-	-	-
전북	80	36	14	4	25	1	-
전남	96	58	20	-	10	7	1
경북	84	50	13	-	10	11	-
경남	86	55	3	4	13	7	4
제주	26	24	-	-	2	-	-

※ 2008년 현재 재해위험지구 현황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08년을 기준으로 619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 유형별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침수위험지구가 전국적으로 370개소로 가장 많으며, 유실위험지구는 92개 지구, 붕괴위험지구는 90개 지구, 해일위험지구는 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침수위험에 따른 지정현황은 전라남도가 96개 지구로 가장 많고, 유실위험으로는 전라남도 20개 지구, 붕괴위험은 강원도가 24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재해위험지구 등급은 재해발생 위험도와 시민불편도 등에 작용하며, 재해발생 위험도가 클수록, 국가 기간시설지역과 같이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큰 지역일수록 위험등급이 높은 가 등급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발생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방재마을 구축 개요 및 유형

3.1 방재마을의 구축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방재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며 사후피해복구에 치중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타 부처 유관사업과의 연계성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에 의존하는 등 수동적 예방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재해예방효과가 저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해위험교량, 급경사지, 소규모시설

표 2. 방재마을의 필요성

방재마을의 필요성	
1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부처 유관사업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재해예방효과가 저감됨으로 연계가 필요
2	수해위험교량, 급경사지, 소규모시설 등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시설이 산재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약으로 인해 예방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됨으로 개선이 필요
3	지역방재개념을 도입, 타 부처 유관사업 및 지방관리 재해취약시설 등을 종합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자율방재의식 고취 필요
4	현행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설물을 중심으로 단편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 등과 중복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특화 필요
6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방재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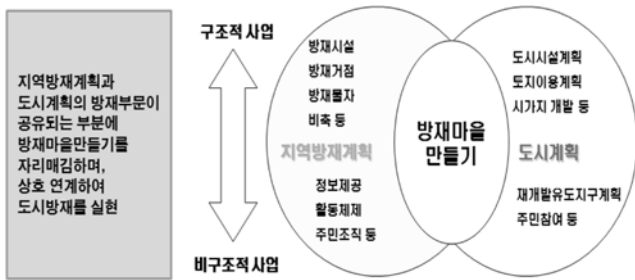


그림 2. 방재마을의 위치

등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시설이 산재해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예방투자가 적기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지역방재개념을 도입, 타 부처 사업 및 지방관리 재해취약시설 등을 패키지와화하고, 주민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재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재마을은 지역방재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와 마을 단위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방재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결합한 개념이다(그림 2).

방재도시계획이 구조적계획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주민참여는 비구조적 계획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주민참여와는 달리 방재분야의 주민참여는 지역의 방재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도시계획분야의 주민참여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2 방재마을의 사업유형

방재마을은 사업유형별 구조적 및 비구조적 사업, 대상지역, 재해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 구조적·비구조적 사업과 공공·민간부문 사업을 종합하여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연구

표 3. 방재마을 사업내용

방재마을 사업내용		
사업유형	대상지역	재해유형
구조적 사업	복합형	태풍
비구조적 사업	도시형	호우
	농촌형	산사태
	산악형	대설
	해안형	지진
		해일(쓰나미)
사업유형	구조적	-시설적 대책에 관한 사업
	비구조적	-조직구조의 개선 사업
대상지역	산악형	-산악지형이 70% 이상
	해안형	-해안에 접하는 일반지역
	도시형	-광역시, 일반시, 읍의 인구밀집지역 -해안에 면하지 않은 지역
	농촌형	-해안에 면하지 않은 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
	복합형	-도시, 농촌, 산간, 해안형의 내용이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위치한 지역
재해유형	태풍	-각종 재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체계적인 예·경보 시스템 구축
	호우	-라이프라인의 방재성 확보
	산사태	-방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도시의 방재구조화(구획화)
	대설	-재해 발생시 위험한 구역에 대한 조치 -일반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도
	지진	-문화재의 재해예방조치 -방재영농체제의 확립
	해일(쓰나미)	-도로재해 예방 -특별방재구역 등의 재해 예방 -피해정보의 수집·장치 등의 정비 -타 기관과의 상호지원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방재마을 만들기는 방재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방재도시계획이 구조적인 각종 시설물 설치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주민참여는 비구조적 내용을 중심개념으로 한 재난대피훈련과 재난예방활동 등이다.

따라서 방재마을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방재마을 만들기 대상지를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산악형, 해안형, 도시형, 농촌형, 그리고 도시·농촌·산악·해안형의 내용이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위치한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방재마을 조성에 있어 재해유형은 태풍, 호우, 산사태, 대설, 지진, 해일(쓰나미)로 분류될 수 있다.

4. 방재마을 구축과 관련한 법률 검토

현재 우리나라는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제정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근원적인 방재를 위하여 행정계획과 개발 단계에서의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

표 4. 방재와 관련한 법령

법령	주요내용
국토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종합계획 :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재에 관한 사항 포함 시·군종합계획 : 안전에 관해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본계획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부문별 내용 포함 도시관리계획 : 안전에 관한 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 : 방화지구/방재지구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에 대한 규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택재개발(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 기본법	도시의 건물밀집지역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도시 공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계획 특정 관리 대상시설로부터의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시행
자연재해 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 대책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 적인 풍수해 방재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표 5. 일본 방재마을 만들기 운영실태

구분	세부구분	목적	내용
법률적 측면	일반적인 방재마을 만들기 법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만들기
		협소도로정비 조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실현
	방재목적의 방재마을 만들기 법률	구진재부흥대책 및 진재부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	진재부흥사업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만들기
		구 피재시가지 부흥정비 조례	진재에 강한 시가지 형성에 기여
행정적 측면	일반적인 방재마을 만들기 행정계획	구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구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침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 강구
		지구계획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기구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정비지구계획”의 제도화
	방재목적의 방재마을 만들기 행정계획	법정계획	지구의 연소방지 기능과 일시 피난로 등을 확보
		비법정계획	행정내부의 조정과 행정과 주민과의 합의 형성
조직적 측면	방재기구정비조합	특정방재기구 정비 지구계획 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임대권을 가진 자가 협동하여 당해 토지구역내 각 기구를 방재기구로 정비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의 방재마을 만들기	
	초나이카이(町内會)	마을중심의 방재활동 조직	

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면서, 방재에 관한 법률조항을 언급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음 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방재업무를 다루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종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방화지구·방재지구를 포함하고 있다.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근거한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해당지역에 대해 방재마을과 연계하여 지역단위의 방재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5. 방재시범마을 구축사례

5.1 일본의 방재마을 운영사례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 운영실태는 표 5와 같이 법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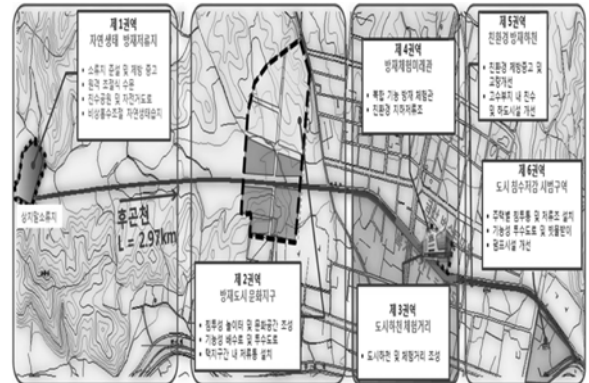
행정적,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률적 측면은 일반적 법률과 방재목적의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지구레벨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은 구(區)단위의 마을만들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와 도로정비를 통하여 쾌적성 향상과 함께 방재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정비사업 관련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지구레벨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해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률에는 「구진재부흥대책 및 진재부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 「구과제시가지부흥 정비조례」 등이 있으며 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방재력 향상에 기여한다.

행정계획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도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방재목적의 행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재마을 만들기 행정계획은 크게 일반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방재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방재관련 도시계획적 사항만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구레벨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방재목적의 방재마을 만들기 행정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은 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임의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표 6. 방재시범마을 사업개요 현황

구분	삼척시 정라지구	금산군 후곶지구
재해 위험 지구 현황	 <p>배치구상(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형 생태습지 방재형 생태이진 방재형 연못 친수공간 감재형체육공원 방재미래센터 주민복지관 향토자료역사관 이시부광장 어목광장 주식장 타운하우스형 주거단지 	 <p>배치구상(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구역: 자연생태 방재저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류지 습지를 개발 않고 원거 조형에 의한 친수공간 및 자연어로 이동용수조 및 자연방수벽 제2구역: 방재도시문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수성 높이며 친환경적인 조성 가용한 배수로 및 우수도로 책자구는 내 재해를 없애 제3구역: 도시자연 제방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자연 및 제방거리 조성 제4구역: 방재체험미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시설 방재 체험관 친환경 저수지조성 제5구역: 친환경 체험농고 및 교정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체험농고 및 교정수원 교정수원 내 친수 및 휴식공간 조성 제6구역: 도시 침수저감 시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방 침투를 늘려 저류조 설치 가용한 우수도로 및 저류단지 침수저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9월 7일 위험등급 가등급의 침수위험지구로 지정 -침수지정면적 : 0.05 km² -건물 51동 주택이주 및 유수지 조성 사업내용 :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생태저류지, 친환경 방재하천 등을 패기 지화하여 방재시범마을 조성
계획특징	<p>구조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생태저류지/친환경방재하천 -감재형체육공원/방재테마친수체육공원 -방재미래센터/방재형 연못 <p>비구조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해일 지도제작 및 대피안내판 설치 -생활보호대상자 전기가스안전점검 -1가구 1소화기 갖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생활보호대상자 풍수해 보험 가입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기획단(자문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생태 방재소류지/방재도시 문화지구 -도시하천 체험거리/방재체험 미래관 -친환경 방재하천/도시침수저감 시범구역 -풍수해 대비 SOP 구축 -방재위험지도 작성 -전기구 풍수해 보험 가입 -1가구 1소화기 갖기 -방재시범마을 추진 기획단 구성
	<p>주요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참여하는 방재문화조성 및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한 사업시행으로 재해예방효과 극대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도시 문화지구 조성을 통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방재도시 모델로서 활용 도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집중현상 분산 -친수기능 회복 및 홍수조절기능 -주민 안전성 향상 및 방재문화 조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수방재능력 강화 -친수공간 확보 및 방재문화 형성 -랜드마크 및 내수침수 저감능력 증대

방재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직의 사례로는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기구 정비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기구정비조합」과 임의의 조직형태인 「마을만들기협의회」, 「조나카이」 등이 있다.

5.2 국내 방재마을 운영사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단위시설물 위주로 진행돼 재해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이로 인해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방재시범마을을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남도 장흥군 3곳을 “2009년 방재시범마을”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방재시범마을조성사업은 소방방재청이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각 부처 유관사업 등 방재관련 사업을 통합해 지구단위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재시범마을에 재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업과 전기구 풍수해보험 가입, 1가구 1소화기 비치 등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 방재시범마을” 조성 대상지의 조성사업계획은 표 6과 같다.

6.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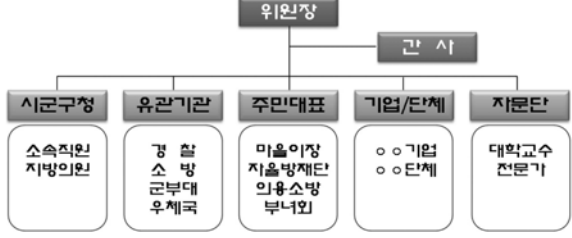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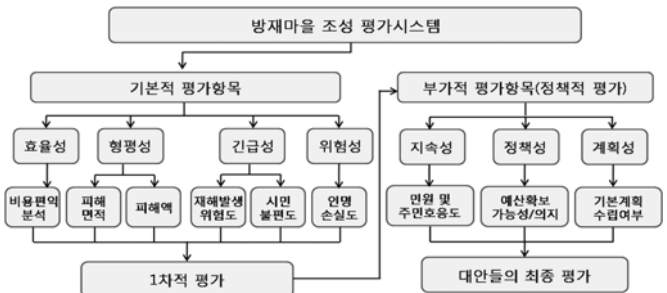
소방방재청은 방재마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도, 시·군·구 상호 협의하여 방재마을 사업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조정하고 국고지원규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방재마을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유형에 따른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민·관단체 파트너십에 의한 「방재안전도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재마을의 구조적 사업에 대한 예산조치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와주민은 비구조적 재해예방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방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방재마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사례를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의 핵심은 지역방재력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방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며, 주민참여의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방재마을을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도록 한다.

표 7. 방재마을 구축 및 추진전략

구분	내용	유사 사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행정기관 위주보다는 지역주민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은 주민들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주목적으로 추진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안전점검의 날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마을안전지킴이/놀이터 안전 모니터(수원) -안전 모니터링/안전일기장 보급사업(원주) -어린이 안전동화책 제작/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서울 송파구)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주민참여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07.01.03) -서울특별시 강북구/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09.05.15)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06.09.22) -서울특별시 노원구/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조례('09.07.30)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08.01.07)
지역방재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방정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재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함	
비구조적 재해예방 사업비 확충	- 대부분의 방재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구조적 재해예방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비구조적 재해예방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방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방재훈련이나 방재지도 만들기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비의 비율을 최소 20~30% 정도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전컨설팅 제도 및 단계별 평가 시스템 운영	“방재마을 만들기”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부터 사업추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방재전문가의 컨설팅과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단계별 성과평가를 실시	

본 연구에서는 방재마을구축과 관련하여 방재마을의 개념 및 사업 유형, 관련법에 대해 정리하고, 국내·외 시범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 방재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여 방재마을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방재마을은 지역방재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와 마을 단위에 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방재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결합한 개념이다.

방재마을은 주민 주도적 마을운영과 재난발생시 주민의 자율방재의식에 기초하며, 방재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와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의 핵심은 지역방재력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방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며, 주민참여의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방재마을을 구축 및 운영을 추진 하도록 한다.

또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9년 학사경비보조금 재원으로 강원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백민호 (2008)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소방방재청.
 조원철, 최성열 (2005)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소방방재청.
 균형발전지원본부 (2007)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개념정립 연구용역 보고서.
 문채, 윤혜철, 조판기 (2003)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이지향, 신호준, 백민호 (2009)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 발표 논문집.
 이지향, 신호준, 백민호 (2009) 한국형 방재마을 조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사회안전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논문집.
 이지향, 신호준, 백민호 (2010) 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권건주, 한기원, 백민호 (2009)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9권, 제5호.

◎ 논문접수일 : 10년 05월 17일

◎ 심사의뢰일 : 10년 05월 18일

◎ 심사완료일 : 10년 06월 04일